

‘닭·오리·계란 이력제’를 위한 농장식별번호 발급 신청 안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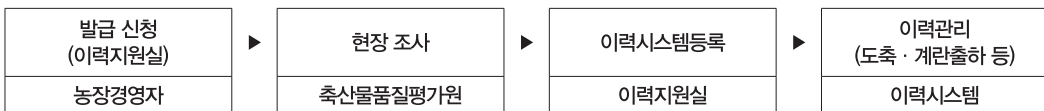
- 닭, 오리 사육시설 및 부화장을 경영하는 농장경영자께서는 농장식별번호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 ‘농장식별번호’란 닭, 오리를 기르는 사육시설을 식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가축사육시설마다 부여하는 6자리 숫자의 고유번호입니다.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6114호, 2018. 12. 31.)

◎ 대상 : 닭 또는 오리를 기르는 사육시설 및 부화장의 농장경영자

※ 제외 : 사육시설의 면적이 10제곱미터 미만인 가축사육업

◎ 기한 : 2020년 1월 1일 시행 전까지

◎ 발급절차



◎ 신청방법

- 전화로 신청 (이력지원실) 1577-2633
- 발급신청서 작성 후 e-mail 또는 팩스(Fax)로 신청
(e-mail) mrtace@ekape.or.kr (Fax) 044-410-7178

◎ 제출서류 : 축산업 허가·등록증(부화업) 또는 농장경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준수사항 : 사육현황신고(매월1일~5일), 닭·오리의 이동신고(농장간 이동시)

■ 가족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의2호서식]

농장식별번호 발급신청서(닭 · 오리 · 부화장)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	------	---------

신청인	①성명(경명자)	② 주민등록번호(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③주소(거주지)	④ 전화번호

⑤ 사육가족의 종류 및 사육방식	<input type="checkbox"/> 닭	<input type="checkbox"/> 원종계장	<input type="checkbox"/> 종계장	<input type="checkbox"/> 산란농장	<input type="checkbox"/> 육용농장	<input type="checkbox"/> 부화장
	<input type="checkbox"/> 오리	<input type="checkbox"/> 원종오리장	<input type="checkbox"/> 종오리장	<input type="checkbox"/> 산란농장	<input type="checkbox"/> 육용농장	<input type="checkbox"/> 부화장

⑥ 가족사육시설	농장명칭:	
	사육시설 소재지:	
	관리자 성명:	[전화번호:]
	GPS좌표:	
	사육개시 연월일:	. . .

⑦ 사육규모 (평균)

사육현황			
⑧허가등록사항	<input type="checkbox"/> 허가 <input type="checkbox"/> 등록 <input type="checkbox"/> 무허가	⑨고유번호	⑩사육 여부 <input type="checkbox"/> 사육 <input type="checkbox"/> 휴업 <input type="checkbox"/> 폐업
⑪사육환경	<input type="checkbox"/> 방사사육 <input type="checkbox"/> 축사 내 평사 <input type="checkbox"/> 개선된 케이지 <input type="checkbox"/> 기존 케이지	⑫인증여부 (선택사항)	<input type="checkbox"/> HACCP <input type="checkbox"/> 친환경 <input type="checkbox"/> 동물복지 <input type="checkbox"/> 무항생제 <input type="checkbox"/> 유기축산

⑬ 사육 규모 (상세)	육계	실용계		삼계(백세미)		종계		원종계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	3~6개월	3개월 미만	6개월 이상	3개월 미만	3~6개월	6개월 이상
		마릿수									
	산란계	실용계			종계			원종계			
		3개월 미만	3~6개월	6개월 이상	3개월 미만	3~6개월	6개월 이상	3개월 미만	3~6개월	6개월 이상	
		마릿수									
	토종닭	실용계		종계		원종계		순계			
		70일령 미만	70일령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마릿수									
	오리	육용오리		종오리		원종오리					
		45일 미만	45일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마릿수									

「가족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 신청인 전화번호

개인정보 및 제3자 제공 · 활용 동의서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사육정보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이력관리, 축산물수급관리, 축산물안전관리, 가족방역지원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수집 ·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가족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가족이력관리, 축산물안전관리, 방역 효율성 등 축산업 및 관련 산업 발전과 소비자의 이익 보호 및 증진 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권한의 위임·위탁된 기관에게 제공 및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 ※ 위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 활용 동의는 농장식별번호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등록 말소 후에도 가족이력 정보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 ·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위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 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가족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 사육 · 이동, 도축 등 가족이력 정보를 활용하는 가족질병 및 축산 관련 각종 지원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 활용 동의자]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축산업 허가증 · 등록증 또는 농업경영체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유의 사항

1. ①~④란은 신청인(위탁농장은 위탁자, 자가·위탁농장은 경영주 및 위탁자)에 대한 기초정보를 기재합니다.
2. ⑤란에는 사육가족의 종류 및 사육장 형태에 따라 표시합니다.
3. ⑥란에는 신청인이 소유 및 관리하는 가족사육시설에 기초정보를 기재합니다.
4. ⑦란에는 가족사육시설에서 사육 가능한 평균 사육두수를 기재합니다.
5. ⑧허가등록사항 확인을 위해 허가증, 등록증 사본 첨부
6. ⑨고유번호 : 축산업(가족사육업)허가증, 축산업(가족사육업) 등록증에 있는 고유번호 5자리 기재
7. ⑩(방사사육)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산란계의 자유방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축사내 폐사)축사내 개방형 케이지를 포함, (개선된 케이지)사육밀도가 마리당 0.075㎡ 이상인 경우, (기존 케이지)사육밀도가 마리당 0.05㎡ 미만인 경우
8. ⑪(인증여부) 해당 가족사육시설에 해당하는 인증사항을 선택합니다. [선택사항]
9. ⑫(사육규모 상세): 농장경영주(관리자) 등이 신고하는 현재 사육하고 있는 마리수

육계 토종닭	○ 고기를 이용할 목적으로 사육하는 닭 - 1개월 미만 : 부화 후 30일령이 되지 않은 닭 - 1개월 이상 : 부화 후 30일령이 넘은 닭 - 70일령 미만 : 부화 후 70일령이 되지 않은 닭 - 70일령 이상 : 부화 후 70일령이 넘은 닭	산란계	○ 식용계란을 생산하기 위해 사육하는 닭(식용 유정란을 생산하는 닭도 포함) - 3개월 미만 : 부화 후 90일령이 되지 않은 병아리(초생추와 중추) -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부화 후 90일이 넘고 180일이 되지 않은 큰 병아리(대추) * 주의 6개월 미만의 닭이 산란을 50%이상 도달 하였을 경우에는 6개월 이상에 기입 - 6개월 이상 : 6개월 이상인 닭
산란계	○ 식용계란을 생산하기 위해 사육하는 닭(식용 유정란을 생산하는 닭도 포함) - 3개월 미만 : 부화 후 90일령이 되지 않은 병아리(초생추와 중추) -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부화 후 90일이 넘고 180일이 되지 않은 큰 병아리(대추) - 6개월 이상 : 6개월 이상인 닭	육용오리	○ 고기를 이용할 목적으로 사육하는 오리 - 45일 미만 : 부화 후 45일령이 되지 않은 새끼오리 - 45일 이상 : 부화 후 45일령이 넘은 새끼오리
원종계 중계 (순계)	○ 병아리 부화용 계란(종란)을 생산하기 위해 사육하는 닭 - 3개월 미만 : 부화 후 90일령이 되지 않은 병아리(초생추와 중추) -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부화 후 90일이 넘고 180일이 되지 않은 큰 병아리(대추) - 6개월 이상 : 6개월 이상인 닭	중오리	○ 새끼오리 부화용 오리알(씨알)을 생산하기 위해 사육하는 오리 - 6개월 미만 : 부화 후 180일령이 되지 않은 새끼오리(초생추, 육성오리) - 6개월 이상 : 6개월 이상인 오리

처리 절차

